

해외진출 가이드①

세계경제는 다극화·개방화 속에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기업들이 극심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근시안적인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 방식에 의해 세계시장을 점유해 가고 있으며, 일본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투자가 매년 평균 5% 이상 증가할 정도로 해외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글로벌 시장 점유를 위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난 196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에는 해외건설 수주액이 300억불을, 2010년에는 700억불을 돌파했고, 진출지역도 중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 및 중남미 지역까지 확대되는 등 그 영역을 확장해왔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인력·자금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지는 회원사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정부 각 기관의 해외진출 서비스 및 제도, 해외진출 시 필수 체크사항 등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가이드를 게재한다.[편집자주]

1. 해외건설업 신고

해외에서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건설업신고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하여야 함(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10조)

가. 해외건설업 신규신고

- 신고자격 : 해외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건축사사무소, 환경방지사설업 등 관련 업종 국내 면허 또는 등록증 소지자



나. 해외건설업 변경신고

- 신고사항 :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신고기한 : 신고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 해외건설업 현지법인 설립신고 및 인수신고

- 신고기한 : 그 설립일 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벌칙 및 과태료

- 변경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해외건설업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 전화 (02)3406-1069, 팩스 (02)3406-1123
- ※ 홈페이지 : www.icak.go.kr(해외건설종합정보시스템 → 해외진출 → 해외건설업신고)

2.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설치신고 및 사후관리

가. 신고대상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수수하는 행위(외국환거래규정 제9-16조)

나. 신고기관

- 비금융기관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해외지사의 구분(외국환거래규정 제 9-17조)

- 해외지점 :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 영위
- 해외사무소 :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 (종교단체포함)가 국외에서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수행

- 금융기관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 불 이상인 자
-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공공기관
- 금융감독원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 불 이상인 자
- 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 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 다목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실적에 미달하는 자로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
- 국내의 신문사·통신사 및 방송국
- 기술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에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3. 해외 건설기자재 무환 반·출입 확인신고

수출절차 간소화 및 재 반입시 세제혜택으로 원활한 공사수행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해외건설협회에 신고(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제2호)

가. 대상 물품

- 해외건설공사용 소요 기자재
- 중고용품을 포함한 해외근로자용 일용품, 식료품 등

나. 대상 업체

-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수출동향보고 및 계약체결 보고를 이행한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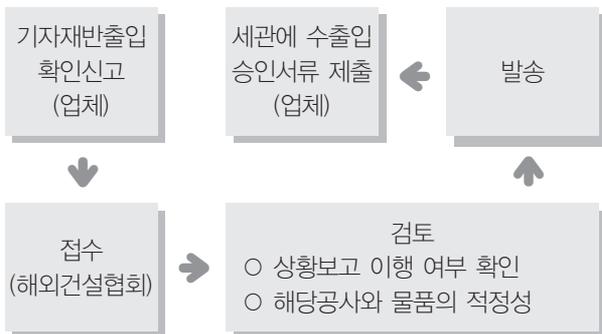
다. 검토 기준

- 해외건설공사용 소요자재인지의 여부 및 적정여부
- 국내 재반입 여부
- 반출입 기자재의 국내 수요 균형 등을 고려한 정부 시책과의 일치여부

라. 확인 중지

- 관계기관으로부터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 기자재의 용도가 해당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 구비서류 및 내용의 불비

마. 확인신고 절차



▶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프로젝트지원실 :
전화 (02)3406-1079, 팩스 (02)3406-1124
- ※ 홈페이지 : www.icak.go.kr

4.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

우리나라는 2010년 10월 31일 현재 22개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통하여 우리 국민이 외국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상대국가의 사회보장세를 면제 받음으로써 해외 진출 기업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가. 사회보장협정의 유형

-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의 사회보장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그 형태는 협정의 적용 범위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 협정(totalization agreement)」과 「보험료 면제 협정(contributions only agreement)」으로 크게 구분

나. 협정내용

- 가입기간 합산협정 (totalization agreement)
 - 대상국가(14개국) : 미국, 캐나다,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벨기에, 아일랜드,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 내용
 - ① 사회보험료 이중 부담 방지와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규정을 포함한 협정
 - ② 양 국가에 연금을 가입하였으나 한쪽 국가의 가입기간으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 기간요건(미국의 경우 10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양 국가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



족할 수 있도록 함

- ③ 파견근로자와 같이 단기간(미국의 경우 5년) 협정당사국을 왕래하면서 근로 또는 자영하는 사람들은 단기·파견기간 동안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만 가입 가능

- 보험료면제 협정 (contributions only agreement)
 - 대상국가(22개국) : 이란, 영국, 네덜란드, 중국

(잠정조치), 이탈리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8개국과 상기 가입기간 합산협정 14개국

- 내 용

- ① 양국 가입기간 합산규정은 제외하고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방지만을 규정한 협정
- ②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와 같이 협정당사국을 왕래하면서 근로 또는 자영하는 사람은 단기·파견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만 가입

문의처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몽골, 호주, 우즈베키스탄,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이태리, 헝가리, 프랑스,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란, 중국
면제기간	5년간	3년간	제한 없음

- ※ 면제가능 기간은 협정국 동의시 2년~3년 연장 가능
- ※ 이란에서는 가입증명서 제출 없이 한국 국적만으로 면제됨

- 면제절차 : 공단에 가입증명 발급신청(파견증명서류 첨부) → 파견국가 사회보장기관에 가입증명서 제출

→ 서식자료]에서 출력(서식명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

- ※ 가입증명서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의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참조

▶ 문의처

- 보건복지가족부 연금정책과 : (02)2023-8317, 팩스 : (02)2023-8311
 - ※ 홈페이지 : www.mw.go.kr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 (02)2176-8701~8710, 팩스 : (02)3485-9804
 - ※ 홈페이지 : www.nps.or.kr
- 국민연금공단 전국 대표 : 전화 1355